

- ③ ‘변경의 종류’란에는 변경대상 취급시설에 관련하여 (가) 시설규모 변경, (나) 시설위치 변경, (다) 시설 재질 변경, (라) 취급물질 변경, (마) 기타 중 한 가지 이상의 종류를 기재한다. 2가지 이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의 종류를 모두 기재하고, ‘(마) 기타’라고 기재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기재한다.
- ④ ‘변경내용’란에는 변경의 종류별로 변경전의 사항과 변경후의 사항을 기재한다.
- ⑤ ‘후속조치’란에는 (가) 해당 변경사실로 인해 ‘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’를 한 경우 ‘변경신고’한 사실과 변경신고일자를 기재하고, (나) ‘시범생산계획서’를 작성·제출한 경우 ‘변경신고’한 사실과 변경신고 일자, 시범생산기간 및 원상복귀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.
- ⑥ ‘담당자’란에는 변경대상 취급시설의 관리자를 기재한다.
- ⑦ ‘확인자(일자)’란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를 ‘확인자’로 기재하고, 장외영향평가서의 기본평가정보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신화된 것을 확인한 일자를 기재한다.

### <변경내역서 작성 예시>

| 번호 | 일자                  | 변경대상<br>취급시설의 명칭 | 변경의 종류      | 변경 내용<br>(변경전→변경후)                      | 후속조치  | 담당자 | 확인자(일자)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|-----|-----------|----|
|    | '17.1.2             | □□□              | 시설규모 변경     | 20톤 → 15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△△△ | 홍길동(1.10) |    |
|    | '17.2.5             | ◇◇◇              | 시설위치 변경     | 도면 0000번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신고('17.2.2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△△ | 홍길동(2.5)  |    |
|    | '17.4.5             | ◇◇◇◇◇            | 시설 재질<br>변경 | 00 →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○○○ | 홍길동(4.10) |    |
|    | '17.5.10<br>'17.7.1 | □□□□□            | 취급물질 변경     | 황산30% → 황산 15%<br>황산30% → 황산<br>15%(복귀) | 시범생산<br>신고일자: '17.5.9<br>지속기간:<br>5.10~6.30 | ○○○ | 홍길동(7.2)  |    |

### ● 환경부고시제2017-247호

2018년도 전기·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전기·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28일

환경부장관

전기·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

| 대 상   | 2018년   |
|---|---------|
| 27개 품목<br>(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<br>법률 시행령 별표3) | 6.0kg/인 |

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